

2020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0년 10월 15일(목) 16: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원회의원(11명)

■참석의원 : 송영출, 천성오, 김진곤, 김태석, 김태훈, 김건호, 신희연,
고민석 (8명)

■불참의원 : 이정훈, 김재요, 이재현 (3명)

4. 안 건

가. 자문

- 1)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나. 규정 개정/폐지/신설(안)

- 1)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 2)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3)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4)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5) 교원 신규 임용 내규 개정(안)
- 6)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7) 전임 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안)
- 8)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 9) 직원복무 규정 개정(안)
- 10) 계약직원 임용 내규 개정(안)-1
- 11) 계약직원 임용 내규 개정(안)-2
- 12)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3)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4)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5)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6) 연구비 관리 규칙 폐지(안)
- 17) 직무 발명 규정 개정(안)
- 1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개정(안)
- 19)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규정 신설(안)
- 20)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 개정(안)
- 2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자문】

1)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처 예산조정팀장이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의 주목적은 대학비대면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장학금 교비절감액을 마련하기 위함임을 설명하며 수입과 지출의 세부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의 내용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고, 이에 학생회장 권한대행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인지하여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답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규정 개정/폐지/신설】

1)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법인 정관상 광운대학교 일반직원 정원의 직종 통합 및 직급별 직원 정원을 조정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2)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기획부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외국인학생 직권휴학 제도 신설
 - 대학원 통합학칙 제 22조(학기당 이수학점) 개정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3)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교육지원팀 담당직원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2022학년도부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세부전공 명칭 변경
 - 외국인학생 학위수여 요건 변경
- 제65조(학위수여)의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에”를 “외국인 학생에 대한 규정에”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4)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교육지원팀 담당직원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외국인학생 학위수여 요건 변경
- 표현의 정확성을 위해 제33조(졸업요건)의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에”를 “외국인 학생에 대한 규정에”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5) 교원 신규 임용 내규 개정(안)

-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경력평가시 실무경력도 포함되도록 변경
 - 1차 심사 종료 후 학과 의견 개진 가능
- 위원이 경력평가시 실무경력을 포함하도록 변경되는 사유를 묻고, 교무처장이 이에 대해 다양한 사회경험(수상, 회사경력 등)을 심사표상에 반영할 근거가 없어 감안 할 수 있도록 추가함을 설명하다.
 - 혼선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15조(기초심사) ②항의 단서조항과 제16조(전공심사) ⑤항의 “필요한 경우”의 문구를 해당 부서에서 수정하여 상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6)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초빙교수 채용 절차 변경 및 겸·초빙교수 담당시간 관련 예외 적용
- 위원이 제8조(임용방법 및 절차)에서 “임용위원회”의 구성을 묻고, 교무처장이 이에 대해 단과대학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지침으로 마련하여 구성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위원이 제11조(복무) ④항 단서 조항의 예외 사유를 묻고, 교무처장이 이에 대해 교육부 종합감사를 대비하여 추가하였음을 설명하다.
 -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제8조(임용방법 및 절차) ④항 “임용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임용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7) 전임 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교무처장이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전임총장 퇴임 후 총장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처장 책임시수 적용

- 제2조(정의) ④항 “그 직무를 수행하고 퇴임한 총장을 말한다”를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총장을 말한다”로 수정하기로 하다.

▪ 제4조(예우) ①항 “전임총장의 주당 책임시수는 처장 강의시수로 한다. 다만 총장 퇴임직후 1년간은 책임시수를 감면할수 있다”를 “전임총장의 총장 퇴임직후 1년간은 책임시수를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책임시수를 주당 3시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다.

▪ 제4조(예우) ②항 “전임총장은 본 대학교의 제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다”는 삭제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8)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법인 정관상 광운대학교 일반직원 정원의 직종 통합 및 직급별 직원 정원을 조정
 - 민법 일부 개정에 따른 인사규정 용어 변경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9) 직원복무 규정 개정(안)

-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배우자(처) 출산휴가 기간 조정(1일 → 10일)
 - 임신중의 여성직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조정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0) 계약직원 임용 내규 개정(안)-1

-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무기 계약직원 직무분야 입학처(입학사정관실) 인원을 5명으로 정하고, 인원 범위 내 재직자 변경 허용
 - 위원은 계약직원 임용 내규의 [별표 1]은 TO개념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설명하고, 총무팀장과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1) 계약직원 임용 내규 개정(안)-2

-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외국인 계약직원의 주거 안정화 도모를 위한 주거지원비 지급
 - 위원이 주거지원비 지급금액 및 기준을 물고, 이에 총무팀장이 타 대학사례와 지

급금액을 답하다.

- 위원이 향후 외국인 계약직원 증가로 인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총무팀장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 후 진행하기로 답변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2)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 담당직원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본교 사회복지학연계전공 취득기준 변경
 - SW중심대학 사업의 연계전공 신설 반영
- 표현의 정확성과 학생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1]의 연계전공별 이수 학점표의 “사회복지학(2020학년도 신입생부터)”를 “사회복지학”으로 수정하고 하단의 각주로 별도 표기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13)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기획부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외국인 대학원생 직권휴학 제도 신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4)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 담당직원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교육부 「대학생 공결 인정」제도개선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적정한 기간 동안 공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③항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15)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 담당직원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본교 사회복지학연계전공 취득기준 변경에 따른 이수학점 범위 내용 수정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6) 연구비 관리 규칙 폐지(안)

- 연구지원팀장이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연구비 관리 규칙 폐지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7) 직무 발명 규정 개정(안)

- 산학사업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기술이전 되는 경우에 대한 직무발명 규정 변경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개정(안)

- 연구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및 담당부서 등 변경
-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제3조(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②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를 삭제하기로 하다.
 -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제3조(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⑤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를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19)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 개정(안)

- 산학사업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노사 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인사규정 용어 및 직원 처우 변경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20)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연구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교육부훈령 제263호「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근거에 의거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 개정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21)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개정(안)

- 기획부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학점은행제 학업성적평가의 절대평가 규정 신설
- 학칙과의 통일성을 위해 제18조(성적부여) ①항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를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로 수정하기로 하다.
 - 제18조(성적부여) ①항 "실습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실습비중이 수업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별도 논의 사항】

1) 교수업적평가 규정 [봉사 분야 기준]

- 위원장이 현행 교수업적평가 규정의 봉사분야 기준에서 교수평의회 교내봉사 점수와의 균형성과 형평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위원들의 교내봉사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다.
 - 의결내용 : 상기 제안사항이 차기 위원장 및 위원들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교무처에 제안할 것을 위원 전원이 동의하다.

6. 폐회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10월 15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장 송영출 (서명)

부의장 천성오 (서명)

평의원 김태석 (서명)

평의원 이정훈 (서명)

평의원 김재요 (서명)

평의원 김진곤 (서명)

평의원 김태훈 (서명)

평의원 김건호 (서명)

평의원 신희연 (서명)

평의원 이재현 (서명)

평의원 고민석 (서명)